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592
----------	-------

발의연월일 : 2026. 4. 23.

발 의 자 : 이상식 · 박지원 · 이광희
권철승 · 정진욱 · 박정현
장경태 · 김영환 · 이개호
안태준 · 양부남 · 진성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득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부동산 원시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그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게 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새롭게 도입되는 취득세 성실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해당 제도에 적용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성실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92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위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8절에 제9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4(성실신고확인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20조의2제1

항에 따라 취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되는 세액은 120만원(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취득당시가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취득당시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전액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92조의4(성실신고확인에 대한</u> <u>감면) ① 「지방세법」 제20조</u> <u>의2제1항에 따라 취득세 신고</u> <u>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u> <u>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u> <u>를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되는</u> <u>세액은 120만원(법인의 경우에</u> <u>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조례</u> <u>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u> <u>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취득당</u> <u>시가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u> <u>서 그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u> <u>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u> <u>합한다)된 취득당시가액의 100</u> <u>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u> <u>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전</u> <u>액 추징한다.</u> <u>③ 제2항에 따라 취득당시가액</u> <u>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u> <u>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u> <u>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u> <u>3개 과세연도 동안 제1항에 따</u></p>

큰 취득세 경감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